

EFSB 2.0 신청서에 관한 예비 제안

I. 소개

2024 년 11 월, Maura Healey 주지사는 “청정 에너지 그리드를 촉진하고 형평성을 높이며 요금 납부자를 보호하는 법”¹ (“2024 기후법”)에 서명했습니다. 2024 기후법의 주요 초점은 매사추세츠 주의 야심찬 기후 및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또는 “CEIF”)의 입지 및 허가 절차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2024 기후법의 주요 조항은 주 및 지역 수준에서 CEIF 의 입지 및 허가의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사전 제출 및 검토 절차에 의미 있는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2024 기후법은 오랫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 및 허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온 매사추세츠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위원회(“EFSB” 또는 “부지 선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주, 지역 및 지방 수준의 검토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² 특히 2024 기후법에서는 EFSB 가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LCEIF”)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역, 지방 및 주 승인을 발급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SCEIF”)³에 대해 주 통합 허가 및/또는 지방 통합 허가를 발급하는 새로운 통합 허가 절차⁴를 신설합니다. 본 예비 제안의 초점은 개정된 권한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가 검토하고 허가할 다양한 유형의 CEIF 에 대해 EFSB 가 “공통 표준 신청서”를 개발하도록 한 2024 기후법의 지침에 맞춰져 있습니다. 2024

¹ St. 2024, c. 239.

² 오늘날 부지 선정위원회의 전신인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위원회는 1973 년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1973, c. 1232.

³ G.L. c. 164 § 69U 조는 소규모 청정 송배전 기반 시설(“SCT&D”)의 신청인이 필요한 모든 주, 지방 및 지역 허가를 포함하는 EFSB 의 통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9V 조는 소규모 청정 에너지 발전(“SCEG”) 및 소규모 청정 에너지 저장(“SCES”) 시설의 신청인이 필요한 모든 주 허가를 포함하는 통합 주 허가를 EFSB 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9W 조는 지자체가 SCEIF 에 대한 통합 지역 허가 요청을 EFSB 위원장에게 회부하여 “신규” 심사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처음에 지역 허가 담당자에게 제출된 통합 지역 허가 요청을 EFSB 위원장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⁴ 2024 기후법에서는 “통합 허가”를 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해 발급하는 허가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이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모든 시, 지역 및 주 허가를 포함하지만, 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정 주 기관에 위임된 특정 연방 허가는 제외됩니다. 제출 신청 유형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SCEIF 에 대해 발급하는 통합 허가에는 통합 주 허가 및/또는 통합 지방/지역 허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후법에 따르면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6년 3월 1일까지 신청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과 지침을 개발하여 공포해야 합니다. 공통 표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EFSB가 표준 신청서를 개발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EFSB가 완전성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적 마감일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도록 합니다; EFSB가 법적 조사 결과를 내릴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도록 합니다(69H 조); 그리고 이해 관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본 예비 제안에는 부지 선정위원회가 신청서 요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 제안의 목적은 부지 선정위원회가 올해 말 공식적인 규정 개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예비 제안에는 이러한 신청서 개발의 법적 및 규제적 맥락, 선택 및 고려 사항,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질문을 제시합니다.

II. 예비 제안의 배경

A. 2024년 기후법의 입법 요건

2024년 기후법은 LCEIF 신청자가 부지 선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할 “공통 표준 신청서”를 EFSB가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G.L. c. 164, § 69T(b)(ii)).^{5,6} 매사추세츠주 에너지 자원부(“DOER”)도 SCEIF에 대한 “공통 표준 신청서”를 제정하는 유사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DOER의 역할에는 그러한 신청서 심사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G.L. c. 25A, § 21(d)). 2024년 기후법은 또한 LCEIF 및 SCEIF 신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신청 표준을 설명합니다:

대규모 청정 송전 및 배전 (“LCT&D”) 시설 신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LCT&D 시설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

(ii) 에너지 혜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매사추세츠주 내부 또는 외부, 또는 매사추세츠주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LCT&D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⁵ 2024, c. 239, § 74. DOER는 SCEIF에 대한 “공통 표준 신청서”를 포함하여 통합 지역 허가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G.L. c. 25A, § 21(d). 2024년 기후법에서는 EFSB와 DOER의 각 신청서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SCEIF는 다양한 허가 요청 경로에 따라 EFSB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EFSB와 DOER 신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EFSB가 SCEIF를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FSB와 DOER는 SCEIF 관련 신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⁶ 부지 선정위원회가 공통 표준 신청서를 제정해야 한다는 요건은 G.L. c. 164, §§ 69J 및 69J½에 따른 기존 시설이 아닌 LCEIF에 적용됩니다.

(iii)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또는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없는 경우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입지 및 프로젝트 대안을 포함하여 LCT&D 시설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명;

(iv) 환경 부담(예: 소음 증가 또는 나무 제거)과 혜택(예: “공동 사용 산책로 또는 자연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 포함하여 LCT&D 기반 시설의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

(v) 부지 선정위원회가 정한 모든 사전 제출 협의 및 지역 사회 참여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가 충족할 수 없었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및

(vi) 누적 영향 분석.

St. 2024, c. 239, § 74.

대규모 청정 에너지 발전(“LCEG”) 또는 대규모 청정 에너지 저장 시스템(“LCES”) 시설 신청서에는 LCT&D에 대한 위의 모든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항목 § 69T(c)(ii)(필요성 입증 불필요) 및 항목 § 69T(c)(iii)(프로젝트 대안에 대한 설명 요건 불필요)는 ~~제외~~합니다.⁷ G.L. c. 164, § 69T(d)(ii), (iii). LCEG 시설은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LCEG 및 LCES 신청서에는 프로젝트의 “에너지 혜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G.L. c 164, § 69T(d)(i).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 SCEIF 신청인이 부지 선정위원회로부터 통합 주 및/또는 통합 지역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부지 선정위원회는 공통 표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2024, c. 239, § 74 참조. 이러한 경우, 2024 기후법은 부지 선정위원회에 해당 LCEIF 양식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또한 2024 기후법은 지자체가 통합된 지역 허가 신청서를 EFSB에 회부하여 EFSB 위원장의 신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지방 정부에 제출된 동일한 통합된 지역 허가 신청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G.L. c. 164, § 69W(a).

구역 지정 면제: 2024 기후법 37 조와 91 조는 공공사업부(“DPU”)의 구역 설정 면제 권한을 부지 선정위원회로 이관합니다. G.L. c. 40A, § 3 및 St. 1956, c. 665, § 6(보스턴 시 구역 지정의 경우). 40A 장 구역 지정 면제 권한 이관은 2025년 2월 18일에 이루어졌으며, 보스턴 구역 지정 면제 권한 이관은 2026년 3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24, c. 239, §§ 37, 91, 139. 이 구역 지정 면제 권한은 정해진 표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EFSB 허가 기관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역 지정 면제 검토 범위는 광범위하며, 건설 승인과 유사합니다. 구역 지정 면제 요청은 통합 허가 와 동시에

⁷ LCEG/LCES 신청서에는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젝트의 부지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 프로젝트 부지 선정 절차 및 대안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G.L. c. 164, § 69T(d)(iii).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 신청서의 기타 주요 특성

신청서는 신청자가 완전성 결정을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2024 기후법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CEIF 신청서의 완전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가 거부되기 전에 위원회가 확인한 모든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30 일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CEIF § 69T(f), SCT&D § 69U(b), SCEG 및 SCES § 69V(b)). 2024 기후법에서 정한 부지 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의무 기간은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결정되면 시작됩니다.

2024 기후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신속한 부지 선정 및 허가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예상되는 내용이 불확실하고 완전성 결정을 얻기 위해 수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달성할 수 없습니다(아래 III(F)조 참조). 2024 기후법의 “공통 표준 신청서”에 대한 설명은 양식과 유사한 신청서의 개발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 및 허가와 관련된 복잡성과 사례별 요인을 고려할 때, EFSB 가 조사한 다른 주의 부지 선정 기관에서는 규범적인 양식과 유사한 신청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유사한 '통합 허가' 기능을 갖춘 다른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인 제출 형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규정된 주제, 표준 명명법, 필수 주제 및 증빙 서류의 구조화된 순서, 자세한 제출 지침;
- 시설 기술/규모에 따라 지정된 적용 가능한 표준 및 요건;
- 신청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신청서 내용을 설명하는 필수 프로젝트 개요, 요약 및 설명;
- 필수 증빙 서류.

C. EFSB 신청에 대한 다른 주 및 지방 허가 기관과의 협력

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와 결정에 있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FSB 1.0”(2024 기후법 개정 이전의 부지 선정위원회)에 따른 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5 개 주 정부 기관의 대표와 3 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FSB 2.0”(2024 기후법 개정에 따른 개정된 부지 선정위원회)에 따른 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에는 7 개 주 정부 기관의 대표와 4 명의 공공 위원이 포함됩니다. G.L. c. 164, § 69H. EFSB 2.0 의 부지 선정위원회에 새로 추가되는 두 명의 공공

위원인 매사추세츠 지방 자치 단체 협회(“MMA”)와 매사추세츠 지역 계획 기관 협회(“MARPA”)의 대표는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 허가 전문 지식과 관점을 위원회에 제공합니다.⁸

부지 선정위원회의 각 기관 대표들과 공공 위원에 반영된 다양한 관점 외에도, 부지 선정위원회는 다른 많은 기관과 협력하여 일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 선정위원회와 DPU는 1992년 부지 선정위원회가 DPU로 행정적으로 이전되어 “DPU 부지선정부”로 설립된 이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는 유사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매사추세츠 환경정책법(“MEPA”) 사무소 및 다수의 동일한 에너지 프로젝트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⁹ 부지 선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많은 주 및 지역 기관과도 협력하고 협의합니다.

EFSB 2.0에 대한 규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2024 기후법에서는 부지 선정위원회가 특별히 다음과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DPU; MEPA; DOER;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 매사추세츠주 어류 및 사냥부(“DFG”); 보존 및 휴양부; 매사추세츠주 농업자원부(“MDAR”); 매사추세츠주 교통부(“MassDOT”); 매사추세츠주 공공안전 및 보안행정 사무소(“EOPSS”), 그리고 SCEIF, LCEIF 또는 EFSB에 관할권이 있는 다른 유형의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승인, 명령, 조건 명령, 허가, 면허, 인증서 또는 허가가 필요한 모든 기타 기관, 당국 및 부서. St. 2024, c. 239, § 132.

D. 기존 부지 선정위원회 신청 사례 개요

현재 관할권 시설 건설 청원에 대한 일반적인 제출 요건은 G.L. c. 164, §§ 69J 및 69J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¹⁰ 관할 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프로젝트 신청인은 부지 선정위원회에 초기 서류 제출 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⁸ 2024 기후법은 또한 “환경 정의 문제 또는 원주민 주권에 대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공공 위원을 부지 선정위원회에 임명합니다. G.L. c. 164, § 69H.

⁹ St. 2024, c. 239, § 62는 부지 선정위원회나 프로젝트 제안자가 CEIF 프로젝트에 대한 MEPA 요건(G.L. c. 30, § 61~62L 포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St. 2024, c. 239, § 74는 LCEIF와 SCEIF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전 신청 협의에서 MEPA의 역할을 명시합니다. G.L. c. 164, § 69T(b); 69U(b); 69V(b).

¹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수시로 규정하는 양식과 세부 사항에 따라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 (2)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매사추세츠 주 내 또는 외부, 또는 주 내외 모두), (3) 에너지 전송 또는 저장의 다른 방법, 다른 부지 위치, 다른 전력 또는 가스 공급원, 부하 관리를 통한 요건 감소 등 시설의 대안에 대한 설명, (4) 시설의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 G.L. c. 164, § 69J. 및 G.L. c. 164, § 69J½ 참조.

제출했는데, 이는 주로 판례에 의존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범주를 다루었습니다. 초기 제출 자료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요약,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부지 선정위원회의 검토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제 조항, 제안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의 개요, 부지 선정위원회의 제안된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신청자의 권장 사항의 근거를 명시한 "청원서"가 포함됩니다.

청원서를 보완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개요와 부지 선정위원회의 검토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세부 데이터 및 정보, 판례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 기타 주제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정보 및 분석 모음집("프로젝트 분석")입니다.¹¹ 프로젝트 분석에 포함된 추가 문서는 상세한 지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술 및 과학적 연구, 프로젝트 렌더링 및 기타 시각적 영향 정보, 재무 자료, 이해관계자 및 허가 기관 회의 요약, 구역 지정 조례, 프로젝트 제안자가 검토 절차를 알리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의 지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랜 환경 영향 및 공익 인증서(이하 "인증서") 권한에 따라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주 및 지역 허가 및 승인을 종합적으로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새로 만들어진 통합 허가증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¹² 그러나 EFSB 2.0 에서 새로 만들어진 통합 허가와는 달리,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건설 승인"을 부여하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증서 신청서에는 (1) 시설의 필요성을 문서화한 장기 예측, (2) 다양한 지도, (3) 시설 평면도, (4) 현장 사진 및 시설 렌더링, (5) 필요한 모든 면허, 허가 및 기타 규제 승인의 전체 목록, (6) 신청자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될 것을 요구합니다. 980 CMR 6.03(3).¹³

2024 년 기후법에서 향후 EFSB 제출을 위한 '공통 표준 신청서' 개발 요건을 이행하면 현재 EFSB 접근 방식의 다음과 같은 결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¹¹ 프로젝트 분석 주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프로젝트 개요, (2) 프로젝트 필요성, (3) 프로젝트 대안, (4) 경로/부지 선정, (5) 건설 방법, (6) 프로젝트 영향, (7) 비용, (8) 제안 및 대체 경로/부지의 환경 및 신뢰성 분석, (9) 매사추세츠 주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등이 있습니다.

¹²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4 기후법에 따라 CEIF 가 아닌 프로젝트(예: 가스 파이프라인 및 가스 저장 시설, 화석 연료 발전 시설 등)에 대한 인증 권한을 유지합니다. CEIF 의 경우, 2024 기후법의 통합 허가는 CEIF 에 대한 모든 필요한 주, 지역 및 지방 허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부지 선정위원회의 인증서를 효과적으로 대체합니다.

¹³ 980 CMR 6.03(3)에 명시된 일부 인증서 신청 구성 요소(예: 장기 예측)는 EFSB 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신청자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가 항상 동일한 구조와 구성을 따르지 않아 부지 선정위원회와 다른 당사자들이 관심 있는 자료를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표준 형식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세부 정보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항상 충분한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정보를 일상적으로 문의하여 절차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는 일관된 데이터 소스, 계산 방법, 모델 및 가정이 부족합니다;
- 규정이나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선례에 근거한 부지 선정위원회의 정보 기대치는 신청자가 일관되게 준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정보 격차에 기인한 부지 선정위원회의 추가 조사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III. 신청서에 대한 예비 제안

A. 신청서 유형: 통합 모델 대 목적 기반 모델

EFSB 2.0 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서는 EFSB, 지방, 지역 및 주 허가 기관, 주관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¹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EIF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가진 각 지방, 지역 및 주 허가 기관에서 검토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EFSB 에 권장 허가 조건 및 기타 의견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EFSB 는 다른 허가 프로그램의 범위에 항상 포함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정보도 요구합니다. EFSB 2.0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는 부지 선정위원회의 검토 권한 확대와 병행되며, 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EFSB 서류 제출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EFSB 직원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비슷한 입지 및 허가 의무가 있는 여러 주(예: 미시간, 뉴햄프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의 신청서 제출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대체로 에너지 시설 신청서를 구조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존 신청서 통합” 접근 방식; (2) EFSB 2.0 의 요구에 맞춰 아래에 잠재적 옵션으로 설명되어 있는 “목적 기반 신청서” 접근 방식.

¹⁴ 부지 선정위원회는 2024 기후법이 기존의 실질적인 허가법(예: 91 장)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허가 신청은 여전히 이러한 법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또한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G.L. c. 164, § 69H 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기존 신청서 통합("통합 모델")

통합 모델에 따라 CEIF 신청서는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MEPA 제출 및 EFSB 초기 제출에 전통적으로 포함된 정보 유형을 반영하는 "광범위 항목", (2) EFSB의 통합 허가가 없는 경우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에서 요구하는 허가 신청 및 제출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요건" 항목. 중복 정보를 제거, 다양한 주, 지역 및 지방 허가 프로그램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충되는 조항, 방법 및 표준 해결 등 통합 신청서의 두 항목에서 특정 개선 사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합 모델의 예로는 기존 EFSB 인증서 절차, 로드아일랜드 에너지 시설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통합 허가증, 뉴햄프셔 부지 평가위원회의 인증서가 있습니다.

(a.) 광범위 항목은 전통적으로 EFSB 신청서에 포함되는 주제(예: 프로젝트 설명, 필요성, 프로젝트 접근 방식, 부지 선정, 환경 영향, 비용)와 2024 기후법의 새로운 요건(예: 사전 신청 지역 사회 참여, 누적 영향 분석, 부지 적합성 분석)을 다룰 것입니다. 새로운 EFSB 규정 및 지침 문서는 광범위 항목의 양식과 필수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일관성을 높이고 규제 표준과 기대치를 충족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완전성 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신청자가 제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유연하게 제시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엄격하거나 "규범적" 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b.) "기타 모든 요건" 항목에서 신청자는 먼저 EFSB의 통합 허가 권한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지방 및 주 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및 허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각 주, 지역 또는 지방 허가 기관에 필요한 정보, 설명, 데이터, 지도 및 사양, 신청서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EFSB 규정 및 지침은 신청자에게 일반적으로 검토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각 허가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EFSB 지침은 신청자가 신청서에서 중복되는 정보 요건을 상호 참조하도록 권장하고, 구역 규정과의 충돌을 포함하여 다양한 허가 프로그램 간에 상충되는 요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2. 새로운 표준 신청서("목적 기반 모델")

"목적 기반 모델"에 따라, EFSB는 CEIF 프로젝트의 부지 및 허가 관할권을 가진 주, 지역 및 지방 기관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신청서를 만들 것입니다.¹⁵ 목적 기반 모델의 목표는 EFSB 2.0 규정 및 지침에 따라 CEIF 신청에 대한 단일, 통합, 포괄적인 제출 요건 세트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통합 모델에

¹⁵ 뉴욕의 재생 에너지 부지 선정 및 전기 송전 사무소에서 [최근 제안한 주요 송전 시설 초안 규정](#)은 단일 신청 요건을 만드는 "목적 기반" 접근 방식의 예를 보여줍니다. 위스콘신주 공익 위원회는 적격 에너지 시설에 대한 통합 승인을 발급하지는 않지만, 시설 유형별로 차별화된 [신청 요건](#)에 대한 "목적 기반" 접근 방식의 또 다른 예입니다.

설명된 대로) 달리 요구되는 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목적 기반 모델에는 위에서 설명한 광범위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3. 신청서 모델 선택 시 고려 사항

신청서 모델 선택은 2024 기후법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지 선정위원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신청서 제출 요건을 구조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장단점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지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고려하여 목적 기반 모델보다 통합 모델을 선호합니다: (1) 기존 허가 프로그램/기관의 전문성을 활용; (2) 다른 기관이 초안 허가 조건의 신청 및 제출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익숙한 형태로 필요한 프로젝트 데이터 및 정보 제공; (3) 규제 지연 없이 다른 주 및 지역 허가 프로그램 정책 및 요건의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 가능. 행정적 관점에서 볼 때, 통합 모델은 개발 및 구현이 더 간단하므로 새로운 부지 및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본 예비 제안은 2026년부터 통합 모델을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 기반 모델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목적 기반 모델의 잠재적으로 중요한 단점은 부지 선정위원회가 작성해야 하는 최종 결과물인 통합 허가서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개별 허가, 승인 또는 권한의 합성”으로 정의됩니다. 이 문구는 위원회의 기존 인증 기관의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가진 다른 주 및 지역 기관에서 발급하는 승인 또는 허가 대신 개별 승인 또는 허가를 요구합니다. 인증서(또는 향후 통합 허가예)에 개별 승인을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서 해당 조항을 쉽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¹⁶ 목적 기반 신청서는 기본 허가 프로그램의 자체 문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리하여 해당 기관의 기존 허가 와 매우 유사한 승인서를 위원회의 통합 허가서에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표 1: 신청서 요구사항 구조화를 위한 모델의 장단점

모델	장점	단점
통합 모델	기존 허가 신청서에는 이미 검토 및 승인에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신청자에게 주 및 지방 허가에 대한 기존 신청서 양식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면 다른 기관에서 완전성을 검토하고 허가 조건 초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복 정보를 제거하더라도 프로젝트 신청자의 학습 곡선은 더 짧아질 수	- 여러 허가 신청에 필요한 중복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EFSB 2.0은 다양한 허가 신청 간의 상충되는 요건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는 일반적인 검토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모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¹⁶ 이 법은 허가 조건의 집행 권한을 허가 기관에 돌려줍니다. 2024, c. 239, § 74.

모델	장점	단점
	있습니다. • 기존의 주 및 지방 규칙, 규정 및 허가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 다른 주와 지방 허가 요건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CEIF 신청 요건이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 통합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목적 기반 신청서"와 비교했을 때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목적 기반 모델	• EFSB의 통합 승인에 포함된 모든 개별 허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단일 CEIF 신청서 요건 세트를 만듭니다. • 본질적으로 중복되는 요구사항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허가 신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에게 일관된 요건을 제공합니다.	• 수십 개의 허가 프로그램(부록 A 참조), 규제 요건 및 신청서를 모든 검토자에게 적합한 하나의 통일된 CEIF 신청 요건으로 통합하려면 상당한 양의 자원과 다양한 기관 및 컨설팅 전문성이 필요하며, 2024년 기후법 요건의 적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관 검토자(및 이해관계자)는 이 신청서가 익숙하지 않고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신청서보다 특정 관심사와 요건에 덜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프로젝트 신청자 또한 새로운 요건을 익혀야 합니다. • 주와 지방 허가 요건이 변화함에 따라 특수 목적용 신청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승인 결정은 통합 허가의 정의와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을 관할하는 기관의 집행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신청 정보를 개별 허가로 다시 효과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추가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EFSB 신청서에 사용되는 표준

지금까지 부지 선정위원회 신청 요건에는 환경 또는 기타 유형의 영향을 “준수” 하는지를 구분하는 구체적이고 수치화 된 규제 준수 표준의 예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¹⁷ 대신 부지 선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연방, 주 및 지역 기관 또는 공인된 표준 설정 기관에서 수립한 규제 표준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4 기후법은 부지 선정위원회에 “통합 허가 발급에 적용되는 통일된 건강 안전, 환경 및 기타 표준”을 포함하는 LCEIF 및 SCEIF의 입지 및 허가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G.L. c. 164, § 69T(b), § 69U(b), § 69V(b).

2024 기후법에는 EFSB 2.0 프로세스와 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통합될 새로운 표준 및 표준을 수립하는 기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및 환경 사무국(“EEA”)은 CEIF 프로젝트 부지의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적합성 표준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시설 부지 선정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 최소화 및 완화하기 위한 완화 계층 구조가 포함됩니다. G.L. c. 164, § 69T(b). 이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는 부지 선정 적합성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EEA 환경 정의 및 형평성 사무소는 누적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 신청자를 위한 표준 및 지침을 개발하고, 이후 부지 선정위원회가 이러한 표준 및 지침을 적용하여 규정을 공표 할 것입니다. G.L. c. 164, § 69T(b). DOER는 SCEIF 프로젝트의 부지 및 허가과 관련된 표준, 요건 및 절차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에 심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L. c. 25A, § 21; G.L. c. 164, § 69W.

신청서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부지 선정위원회는 통합 허가 발급에 적용되는 보건, 안전, 환경 및 기타 표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건강, 안전 및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지침 또는 보다 상세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세부 조항을 부지 선정 및 허가 신청서에 직접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EFSB 2.0 신청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가 특정 보건, 안전, 환경 및 기타 프로젝트 영향 표준을 규정하기 위해 신청서 개발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미 사용 중인 기존 표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청서 개발 과정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건강, 안전, 환경 또는 기타 프로젝트 영향

¹⁷ 일부 EFSB 규정은 수치적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성능 표준은 화석 발전 시설에 대한 특정 대기 배출 한도를 설정하여 신청인이 “최첨단 환경 성능 특성”을 통합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980 CMR 12.01(1). 부지 선정위원회의 매사추세츠 내의 액화 천연 가스 저장소 입지 규정에는 해당 시설의 여러 안전 관련 매개 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 제한 및 표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980 CMR 10.00.

표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 분석 절차, 방법 또는 접근 방식을 설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 방법, 접근 방식이 필수 사항인지, 아니면 단순히 권장 사항인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 EFSB 신청서의 '광범위' 항목 개선 사항

EFSB는 2024 기후법의 새로운 요건을 포함하여 각 적용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요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적용 항목의 목록과 해당 항목을 표준화 하는 초기 EFSB의 목표입니다:

- **프로젝트,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 EFSB는 신청자가 CEIF 신청서 초기 항목에 제공하는 기본 프로젝트 정보, 상황 및 사실을 표준화하는 요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CEIF 유형별(예: T&D, 발전, 에너지 저장) 표준 양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전 제출 협의 및 지역 사회 참여:** 2024 기후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제출 협의 및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표준 요건을 EFSB와 DPU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CEIF 신청서에는 필수 사전 제출 활동의 완료에 관한 요약 또는 간략한 설명이 포함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제출 상담 및 참여 예비 제안서를 참조하세요);
-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에너지 혜택:** T&D 시설의 경우, 위원회는 EFSB 판례를 통해 확립된 프로젝트 필요성 입증에 대한 기존 사례를 참조하는 요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례에는 (1) 관련 T&D 시스템 계획 기준, (2) 시스템 신뢰성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부하 예측 포함), (3) 기존 전기 시스템이 예측 기간 동안 피크 및 비상 상황에서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 **에너지 혜택에 대한 설명:** 2024 기후법에서는 LCEG 및 LCES 신청서에 “에너지 혜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G.L. c. 164, § 69T(d)(i) 참조). EFSB 신청에 대한 새로운 요건은 제안자가 이러한 “에너지 혜택”을 문서화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프로젝트 대안:** T&D 시설의 경우, 부지 선정위원회는 프로젝트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EFSB 선례를 기반으로 하는 적용 요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가 첨단 도체, 첨단 송전 기술, 배전망 강화 기술 및 비선로 대안을 분석하도록 하는 2024 기후법의 지침에 따라 EFSB 2.0의 제안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경로 선택 및 부지 선정:** 부지 선정위원회는 규정 및 지침에 모범 사례를 명문화하고, EEA의 향후 부지 적합성 기준, EEA 환경 정의 및 형평성 사무소(“OEJE”) 및 EFSB가 다른 EEA 기관 및 사무실과 협의하여 개발 중인

누적 영향 분석(“CIA”) 기준 등 일부 새로운 요소를 통합하여 경로 및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정량적 채점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지 선정위원회는 모든 CEIF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환경 영향 범주의 표준 세트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신청 요건은 제안된 시설 유형(예: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송전)에 따라 각 영향 범주에 필요한 분석 범위를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항목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구체적인 기준과 분석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누적 영향 분석:** 신청서에는 모든 제안된 시설에 대한 CIA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EEA OEJE 의 표준 및 지침과 이 주제에 대한 위원회의 향후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매사추세츠 주 정부 정책:** 부지 선정위원회는 프로젝트의 매사추세츠 주 정부 정책 준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권장 사례를 반영하는 규정과 지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 **구역 지정 면제 요청:** 2024 기후법은 DPU 구역 지정 면제 권한을 EFSB 로 이관하고, 다양한 에너지 시설과 신청인을 포괄하도록 “공공 서비스 기업”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그 자격을 명확히 합니다. EFSB 2.0 요건은 단독으로 요청하든 통합 허가 요청과 함께 요청하든 구역 지정 면제 요청에 필요한 정보 유형을 다룰 것입니다. 구역 지정 면제에 대한 검토 기준은 광범위하며,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현재 부지 선정위원회의 건설 승인 사례와 유사합니다;
- **프로젝트 개요 영상 준비 및 제출:** EFSB 는 지원자가 서면 지원 서류에 짧은(5-10 분) 프로젝트 개요 영상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옹호'의 톤을 피하면서 관심 있는 일반인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적 정보, 중립적인 언어, 그래픽 및 기타 기능을 동영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T&D 프로젝트의 신청서 관련 프로젝트 동영상(National Grid 에서 제작)은 <https://shorturl.at/Uj7OI>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접근성 기능:** 언어 접근 계획은 EFSB 의 일반인 참여 및 참여 목표, 신청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언어 번역 및 통역 요구와 미국 장애인법(“ADA”) 준수에 도움이 되는 제출 형식 및 사양을 다룰 것입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또한 신청서 형식과 사양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도구를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 또는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 전반적인 프로세스 효율성과 효과를 촉진하는 기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D. G.L. c. 164, § 69W 에 따른 신규 심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L. c. 164, § 69W 에 따라 EFSB 2.0 은 부지 선정위원회의 LCEIF 임계값에 미달하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규 심사는 지방 허가 당국에 통합 지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DOER 요건을 따릅니다. 신규 심사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전에 제출된 통합 지역 허가 신청서에 의존하고 신청인에게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합된 지역 허가 신청서에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EFSB 는 DOER 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E. 정보 기술 요구 사항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는 방대한 분량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신청서는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고 수십 개의 지원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출 내용에는 고해상도 지도, 이미지, 그래프, 증빙 데이터, 사운드 또는 동영상 파일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출 자료의 잠재적 규모와 CEIF 신청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¹⁸ 제출 시스템은 위원회, 기타 허가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자적 제출, 접근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¹⁹ 공공사업부는 곧 기존 전자 신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지만, 아직 EFSB 2.0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FSB 2.0 의 전자 제출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제출 기능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DPU 파일룸(<https://eeaonline.eea.state.ma.us/DPU/Fileroom/dockets/bynumber>)은 과거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EFSB 및 DPU 기록을 위한 공개 데이터베이스 및 보관 센터로, 케이스 공식 진행 스케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진행 스케줄은 번호, 산업, 제출 날짜, 최신부터 오래된 것(지난 20 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까지 시간순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룸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개선된 파일룸이 개발 중이며, 2025 년 3 월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고 더 큰 개별 파일 크기(현재 최대 300 메가바이트)를 수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새 파일 룸에서는 여전히 기관 관리

¹⁸ 매사추세츠 주의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 전기 기반 시설의 예상 증가에 대한 CEISP 보고서를 참조.
<https://www.mass.gov/doc/recommendations-to-governor-maura-healey-on-clean-energy-infrastructure-siting-and-permitting-reform/download>.

¹⁹ 2024 기후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게시판을 개발 및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기후법, c. 239, § 8. 초기 게시판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ass.gov/info-details/efsb-permitting-dashboard>.

직원이 공식 진행 스케줄에 있는 모든 제출물을 수동으로 업로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한 식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 기관에서 지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유사한 전자 파일룸 포털에 직접 문서를 업로드하도록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이러한 파일을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데 소요되는 EFSB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최소한 현재 파일 제출 시스템을 수정하여 EFSB 공식 진행 스케줄에 있는 수많은 공개 의견서를 파일룸에 직접 제출하고 최소한의 행정적 노력만 요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EFSB는 더 큰 기능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변경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고려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주 및 지방 기관이 각자 사용하는 다른 정보 시스템을 채우는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EFSB 2.0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EFSB의 새로운 신청 절차는 이러한 기관의 요구를 해결하여 EFSB 통합 허가가 발급된 후에도 관할 기관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규정 준수 감독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기관들은 관련 정보가 EFSB 2.0에 제출될 때 이를 알려주는 즉각적인 통지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기관은 권장 허가 조건에 대한 진술을 제공하기 위해 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EFSB 2.0 및 다른 기관은 제출된 신청서가 완전한지 평가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F. 신청서 완성도 결정

2024 기후법에서는 EFSB가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엇이 “완전한” 신청서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토 및 프로젝트 개발 시기에 대한 이러한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지 선정위원회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입지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입법 개혁의 의도를 저해하는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완전한” 신청의 정의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의 CEIF 신청서 검토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정책에 명시된 모든 정보 요건을 실질적이고 중요하게 준수하는 신청서. 이러한 결정은 위원장이 서면으로 내리며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안된 정의는 완전성의 기준이 '완벽함', 즉 절차의 후속 증거 단계에서 추가 조사나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절차 지연의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시설,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 (ii) 사전 제출 요건을 만족스럽게 완료했다는 증거, (iii) 주 및 지방 기관이 권장 허가 조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 요건, (iv) 부지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판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의 일부로 몇 가지 구체적인 고려 사항을 강조합니다:

- 신청서에는 부지 선정위원회의 통합 허가가 없는 경우 제안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지방, 지역 및 주 허가, 인가 및 승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²⁰ 이러한 허가 요건의 적용 가능성 및 해당 기관에서 기대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허가, 인가 및 승인을 위해 각 지방, 지역 및 주 정부 기관에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된 허가 프로그램 간에 중복되는 정보 또는 상충되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참조하며, 적절한 설명과 함께 이러한 상충되는 요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²¹
- 신청서에는 부지 선정위원회의 규정 및 지침에서 요구하는 세부 수준과 양식에 따라 증빙 서류, 작업 문서, 모델링, 연구 및 인용된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EFSB 가 정한 '완전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IV. 의견 요청

EFSB 는 예비 제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과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EFSB 는 2026 년부터 제출되는 신청서에 대해 통합 모델을 사용하고 목적 기반 모델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EFSB 는 장기적으로 통합 모델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목적 기반 모델 개발로 전환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부지 선정위원회가 2026 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 대한 목적 기반 모델에 의한 공통 신청서를 개발할 경우, 최근 뉴욕 신재생에너지 부지 및 송전

²⁰ 또한, 부지 선정위원회는 신청자가 신청서에서 필요한 허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적용될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허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가진 모든 기관은 누락이 언제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시정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²¹ 허가 프로그램 간의 충돌을 해결할 때, EFSB 는 다른 법적 또는 규제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신청자에게 가장 제한적인 요건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이는 신청서 제출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규정 초안으로 발표한 [주요 송전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신청 요건의 유용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정 규제 경로에 따라 EFSB 가 SCEIF 를 심사하고 DOER 가 해당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및 신청서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각 EFSB 와 DOER 의 역할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4. EFSB 가 EFSB 2.0 을 위한 새로운 전자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대폭 수정할 경우, 가장 중요한 특징과 기능을 설명해 주십시오.
5. EFSB 2.0 의 예상되는 신청 건수 증가, EFSB 신청의 주제 내용 확대, 더 많은 일반인의 참여, 새로운 EFSB 신규 심사 역할을 고려할 때 수정된 전자 신고 플랫폼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6. 신청서에 소음 분석, 전자기 주파수 분석, 시각적 영향 분석 및 기타 필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 표준과 분석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까?
7. § 69W 에 따른 EFSB 2.0 의 새로운 심사 역할에 따라, 부지 선정위원회는 통합된 지역 허가 목적으로 지자체에 먼저 제출한 기록이 증거 및 절차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8. EFSB 신청서 개발을 안내하기 위한 다른 우려 사항이나 권장 사항은 무엇입니까?

V. 부록

A. 부록 A: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주요 부지 선정 허가 개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4 기후법에서는 EFSB 가 대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LCEIF”)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방, 지역 및 주 승인을 발급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소규모 청정 에너지 기반 시설(“SCEIF”)에 대해 주 통합 및/또는 지역 통합 허가를 발급하는 새로운 통합 허가 절차를 신설합니다. EFSB 통합 허가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주, 지역 및 지방 허가를 평가하기 위해 EFSB 인증서 사례와 최근 제출된 서류를 검토했으며, 이러한 허가는 아래 표 1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1 에는 가능한 모든 허가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EFSB 가 통합 허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주, 지역 및 지방 허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 1. 에너지 시설 입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 지역 및 지방 허가.

기관	허가	관련 법률 및/또는 규정	CEIF 부지 선정과의 연관성
주 정부 수준의 허가			
매사추세츠주 수중 고고학 자원 위원회	수중 고고학 자원에 대한 답사, 발굴 또는 특별 사용 허가	G.L. c. 6, §§ 179-180; 312 CMR 2.00	신청인이 프로젝트 계획 중 잠재적인 수중 고고학 자원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설이 알려진 유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수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존 및 휴양부(MassDCR)	건설 접근, 도로 접근 및 단기 상업 허가	302 CMR 12.00	시설이 DCR 소유지 또는 DCR 통행권 내에 위치하거나, 통행권 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행권 내의 공사와 관련된 경우(예: 고속도로를 가로 지르거나 평행하게 지나는 송전선, 고속도로 아래 방향 굴착) 필수입니다.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	401 수질 인증	G.L. c. 21, §§ 26-53; 314 CMR 9.00; 청정수법(33 U.S.C. 1251 이하 참조); 40 CFR §121	준설 물질 배출, 준설 또는 준설 물질 처리 활동과 관련된 시설이 연방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매사추세츠 주 내 미국 연방 관리 해역에 있고, 33 U.S.C. 1251 에 따라 주 수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연방에서 허가된 배출 활동이 주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 401 조 수질 인증은 기타 배출(예: NPDES 허가 및 FERC 의 수력 발전 허가)에도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	제 91 장 수로 면허	G.L. c. 91; 310 CMR 9.00	갯벌, 큰 연못, 조수가 없는 강과 하천에서 건설, 매립 또는 준설이 필요한 시설에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	최종 종합 대기 계획 승인 및 기타 대기 허가	G.L. c. 111, §§ 142A-142M;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G.L. c. 21N, G.L. c. 30, §§ 62-62L; 310 CMR 7.00; 연방 청정 공기법(42 U.S.C. 7401 이하 참조); 주 이행 계획(40 CFR 51 조)	시설 운영 시 대기 배출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허가는 예상되는 배출 유형과 수준, 현지 대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	지하수 배출 허가(일반 및 개인)	G.L. c. 21, §§ 27 및 43; 지하수 배출 허가: 314 CMR 5.00; 재생수 허가: 314 CMR 20.00; 허가 절차: 314 CMR 2.00	시설에서 위생 또는 산업 폐수를 지상으로 배출하는 경우(예: 상당한 배수 활동) 필수입니다.

기관	허가	관련 법률 및/또는 규정	CEIF 부지 선정과의 연관성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	대체 조건 순서	G.L. c. 131, § 40(습지 보호법); 310 CMR 10.00	신청인이 지역 습지 결정에 대해 MassDEP 지역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주 환경보호부(MassDEP)	폐쇄 후 사용-주요 허가	G.L. c. 111, § 150A 및 310 CMR 19.000	프로젝트가 공중 보건, 안전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립지 덮개, 봉쇄, 통제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매립지 뚜껑의 빗물 배수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매립지의 폐쇄 후 사용에 필요합니다.
매사추세츠주 교통부	차량 및 비차량 접근 허가	G.L. c. 81, § 21; 700 CMR 13.00	시설이 MassDOT 통행권 내에 위치하거나, 통행권 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행권 내의 공사와 관련된 경우(예: 고속도로를 가로 지르거나 평행하게 지나가는 송전선, 고속도로 아래 방향 굴착) 필수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어류 및 사냥부("DFG")	매사추세츠 멸종 위기종 법("MESA") 프로젝트 검토, 결정서, 보존 및 관리 허가	G.L. c. 131A; 321 CMR 10.00	시설에 국가 지정 생물종 서식지가 포함된 경우 필수입니다. MESA 프로젝트 검토는 프로젝트에 따라 습지 허가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²² 또한 습지 보호법의 희귀 습지 중 서식지 구성 요소를 시행합니다.
매사추세츠 주 소방청장 소방청(DFS)	지상 저장 탱크 건설 허가 및 사용 허가	G.L. c. 148 § 37; 502 CMR 5.00	10,000 갤런 이상의 지상 저장 탱크가 있고 물 이외의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에 필수입니다.
지방 수준의 허가			
Cape Cod 위원회	지역 영향 승인 개발	Cape Cod 위원회 법(St. 1989 c. 716, 개정 St. 1990 c. 2, 개정 St. 2014 c. 259)	시설이 Cape Cod 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영향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 Cape Cod 위원회의 "지역 정책 계획"을 포함한 주요 계획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Martha's Vineyard 위원회("MVC")	지역 영향 승인 개발	Martha's Vineyard 위원회 법 (St. 1977 c. 831)	MVC는 규모가 너무 크거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여러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영향 개발(DRI)로 분류됩니다. 공식적으로 DRI 로 분류되면 해당 프로젝트는 마을 위원회가 필요한 허가를

²² DFW의 MESA 기능은 연방 당국의 위임 조항에 따라 통합 허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 c. 239, § 52
참조.

기관	허가	관련 법률 및/또는 규정	CEIF 부지 선정과의 연관성
			발급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MV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수자원 관리청	8(m) 허가	St. 1984, c. 372, § 8(m)	시설이 MWRA가 보유한 지역권 또는 기타 재산권 내에서 건축, 건설, 굴착 또는 횡단을 수반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지역 수준의 허가			
지역 보존 위원회	습지 조건 순서	G.L. c. 131 § 40(습지 보호법), 310 CMR 10.00, 지역 습지 보호 조례	시설이 보호 습지 및 완충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수입니다.
지역 기술/건축/검사 부서	건물 검사관 승인(예: 건축 허가, 철거 허가, 기초 허가, 점유 증명서)	G.L. c. 143, §§ 3-3A; 매사추세츠 주 건축 규정(780 CMR); 매사추세츠 종합 화재 안전 규정(527 CMR 1.00) ²³	주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지 않은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해 해당 시설이 매사추세츠주 건축법(화재, 구조, 전기 및 기타 안전 기준 포함) 및 지역 변형(예: 역사 지구 조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경우, 지역 건물 검사관은 건축 허가 발급 시 매사추세츠 종합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 계획/구역위원회 (지역 선정위원회 또는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	부지 계획 승인	G.L. c. 40A, § 9; G.L. c. 41, §§ 81A-81J; G.L. c. 40A, § 3.	시설이 지역 구역 설정, 토지 사용 규정 및 지역 사회 계획 목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EFSB에 개별 및 포괄적인 구역 지정 면제를 요청하여 현지 부지 계획 검토에서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계획/구역위원회 (지역 선정위원회 또는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	특별 허가	G.L. c. 40A § 9(St. 1956, c. 665의 적용을 받는 보스턴 제외); 지역 조례 G.L. c. 40A, § 3.	지역 구역 지정에 따라 시설이 특별 허가 승인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인 경우에 잠재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EFSB에 개별 및 포괄적인 구역 지정 면제를 요청하여 구역 지정 및 사용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²³

527 CMR 1.00에는 특히 고정식 축전지 시스템(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 포함)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7 CMR 1.00은 고정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적절한 설치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안전 표준을 규정하는 NFPA 855를 포함하여 미국 소방 협회(NFPA)의 여러 표준 및 규정을 참조하여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관	허가	관련 법률 및/또는 규정	CEIF 부지 선정과의 연관성
지역 구역 항소 위원회	구역 지정 차이 및 구역 지정 이의 신청	G.L. c. 40A, §§ 9-17(St. 1956, c. 665의 적용을 받는 보스턴 제외); G.L. c. 40A, § 3.	시설에 지역 구역 지정 조례에 포함된 개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EFSB에 개별 및 포괄적인 구역 지정 면제를 요청하여 구역 지정 완화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공공사업부 또는 기술 부서	하수도 배출/연결 허가	G.L. c. 83 § 1	시설이 지역 관리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 및/또는 배출되는 경우(예: 건설 배수, 신규 입주 구조물)에 필요합니다.
지역 공공사업부 또는 기술 부서	도로 개설/굴착/도랑 허가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 개설 허가: G.L. c. 166, §25; 굴착 및 도랑 안전: G.L. c. 82A("Jackie 법"); 520 CMR 14.00	시설 건설에 공공 통행권(예: 도로, 보도)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건설이 1) 안전 서비스 및 교통 경로와 조정되고 2)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지역 선정위원회 또는 시의회	위치 허가	G.L. c. 166, § 22	시설이 공공 도로에 영구적으로 위치할 경우 필요합니다.
지역 수목 관리인 및/또는 지역 계획위원회	수목 철거 허가, 돌담 철거 허가	G.L. c. 40, § 15C; G.L. c. 87	시설에서 공공 그늘 나무, 지정된 경치 좋은 도로변의 나무, 특정 돌담을 제거할 경우 필요합니다. 허가를 요구하는 나무의 크기는 현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경치 좋은 도로의 시각적 특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